

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보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사업자	업체명	대표자 성명
	사업자등록번호	보고자(직급 / 성명)
	전화번호 / 팩스번호	전자우편
	주소	

어린이용품 정보	어린이용품의 명칭(상표명)	모델명
	제조량	제조기간
	수입량	수입기간
	판매량	판매기간
	거래업체명	

보고 유형	1.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[] 2.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[] 3. 다른 관련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[]
-------	---

어린이용품의 위해성	
---------------	--

회수 등의 내용과 실적	
-----------------	--

회수 등을 하지 못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조치계획	※ 보고 유형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재발 방지 대책	※ 보고 유형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환경보건법」 제24조의2제5항 본문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10 제4항에 따라 외국에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 (서명 또는 인)